

## 歐美的石油稅制

**구미** 주요국은 현재 각국 모두 개발소비세와 일반소비세의 2중 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개발, 일반 모두 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도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구미주요국의 석유, 가스세제는 ①국세, ②일반소비세, ③개별소비세의 3重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1932년에 국내 석유정제업자 보호를 위해 석유 수입국세가 도입되었으며, '73년 5월에 수입라이센스제의 채택에 따라, 일단 폐지되었으나, '75년 12월에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석유관세는 LPG와 아스팔트를 제외한 모든 석유제품 및 원유에 대하여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석유가격하락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石油가격 하락에 따라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수입과징금이라는 전혀 별개의 세제이다.

EC가맹국에 있어서는 '68년 이후 점차 EC 공통관세가 채택되고 있으며, EC역내무역(원유,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원유에 대해서는 역외관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다. 또한 관세수입은 모두 EC 공동체 재원이 되고 있다.

일반 소비세는 미국은 州稅로서 45州에서 채택하고 있다. 과세단계는 小費店頭출하단계, 납세의무자는 소매업자이며, 소매업出稅라고 불리운다.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州에서 면세취급되고 있으며, 뉴욕州, 캘리포니아州등 12개州에서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세율은 소매가격의 2%(버지니아州)에서 6%(캘리포니아州, 일리노이州, 미시시피州)까지 州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석유제품에 대한 小費業出稅는 버지니아州

와 조지아州에서 도로정비에 충당되고 있는 외에는 모두 일반재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州에 따라서는 소매業出稅에 특정지구 가산을 더하기도 하고 혹은 군이나 면이 독자재원으로서 소매業出稅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곳도 있다.

EC 가맹국에서는 각국마다 독자의 일반 소비세외에 EC 통일 일반 소비세로서 '70년부터 점차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의 단단계 과세방식이다. 석유제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단, 영국에서는 자동차용 연료유에 대해서는 15%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밖의 난방유 등에 대해서는 제도세율이 적용되어, 실질면세 취급되고 있다. 서독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에 14%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18.6%가 적용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농업, 어업용 석유제품 및 重油에 9%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외에는, 모두 18%의 표준세율이다.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에 대하여 과세된다. 外船 선박용을 포함한 수출용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산업용, 상업용으로 소비된 석유제품(발전용, 중유나 영업용, 트럭용 경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세부담자에게 환급된다. 각국의 부가가치세수는 그 합계의 1.4%를 상한으로 하여 EC재원으로서 처리되어, 나머지는 모두 일반재원으로 되고 있다. 또한 EC위원회는 현재 가맹국에서 차이가 있는 과세표준 등을 '92년까지 조화시키도록 제안하고 있다. ◎

## 石油消費稅 국제비교

日 本	英 國	西 獨	法 國	美 國	國 圓
가솔린稅 軽油인수稅 석유가스稅 航空機燃料稅 石油稅	炭化水素稅 (Hydrocarbon Oil Duties)	礦油稅 (Mineralölsteuerge setz)	①內國消費稅 (TIPP) 炭化水素支援基金賦課金 (FSH) 프랑스石油研究所賦課金 (IFP) 에너지－國家基金特別稅 (CNE)	礦油製造稅 内國消費稅法 (1948年) 等 法律 No. 334 (1939年)	가솔린稅 (連邦稅) 디젤・特別燃料稅 (連邦稅) 非商業航空用燃料稅 (州稅) 燃料賣出稅 (州稅)
根據 法規 課 稅 目的	가솔린稅－揮發油稅法 地方道路稅法 軽油인수稅－地方稅法 石油ガス稅－石油托收稅法 航空機燃料稅－航空機燃料稅法	炭化水素稅法 (1928年)	礦油稅法	内國消費稅法 (1948年) 等 法律 No. 334 (1939年)	가솔린稅 (内國歲入法) 디젤・特別燃料稅 (内國歲入法) 非商業航空用燃料稅 (内國歲入法) 自動車燃料稅 (州憲法) 燃料賣上稅 (州憲法)
課 稅 段 階	石油對策, 도로 정비등의 제 원활 보	일반재 원활 보	①에너지, 經濟, 交通의 각 정책 목표의 달성 ②일반재 원활의 확보	内國消費稅는一般財源確 保 特別稅 (賦課金)는 特定財 源確保	道路整備等의 재 원활 보 차량용 연료세는 공정 정비 특정 재원 확보 연료매출세는 일반재 원(일 부 특별 세) 확보
課 稅 對 象	가솔린稅－輸入者, 製造者 石油ガス稅－販賣業者 航空機燃料로세－航空機所有 者 石油稅－輸入者, 採取者	수입자, 제조자, 보세청 고 입자	차동	차동	가솔린稅－輸入者, 製造者 디젤・特別燃料稅－小賣業 者 非商業航空用燃料稅－小賣業 者 自動車燃料稅－도매업자 燃料賣出稅－小賣業者 製油所出廠段階, 도매小賣 業者 家庭用暖房油
用 途 免 稅	정유공장 출하단계, 원예단 계 등 수입·국내生産石油製品 기술린 부유 제트燃料油 LPG 潤滑油	輸入·國內生産石油製品 기술린 自動車用轆油 輕質燃料油(暖房油等) 重質燃料油 自動車用 LPG	차동 차동	차동	가솔린 自動車轆油 LPG 가스오일 重質重油
	①未納稅移出製未納稅 인수 ②輸出 ③石化製品제조용 ④發電用 보일러등 ⑤제작 ⑥도면세 ⑦정제용	①수출용 ②시험용 ③선박용 ④외교관용 ⑤드릴링用 ⑥특수용 ⑦부수부수 ⑧기타	①수출용 ②시험용 ③정유공장내 自家消費 ④항공機, 船舶燃料 ⑤난방, 發電用 LPG ⑥특수부수 ⑦부수부수 ⑧기타	①輸出用 ②航空機用 ③石油化學用 ④國鐵用 ⑤農業企業의 發電用, 農 業機械運轉用 ⑥輸出用 ⑦非營利團體用 ⑧其他	①政府, 外交官, 유엔 대표 ②항공機用 ③石油化學用 ④國鐵用 ⑤農業企業의 發電用, 農 業機械運轉用 ⑥輸出用 ⑦非營利團體用 ⑧其他